

영등포구의회
제200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17. 5. 16.

行 政 委 員 會
專 門 委 員 崔 光 默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215호로 2017년 5월 11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5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인터넷 환경의 변화로 실효성이 낮은 서비스를 정비하고, 관련 법규 개정사항 반영과 중복내용 및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인터넷 환경 변화에 따른 실효성이 저조한 서비스 폐지

- 홈페이지 마일리지 제도 및 전자메일서비스 폐지

(안 제15조의2, 마일리지 부여기준 명시된 별표1, 안 제5장, 안 제20조)

나. 관련법규 개정사항 반영

- 관련조례(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)의 개정으로 홈페이지 개선 의견 수렴을 위한 정보화추진 위원회를 정보화자문위원으로 변경(안 제4조)

- 관련법령 개정으로 「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」은 「민원처리에 관한 법률」로 「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은 「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으로 변경(안 제2조제6호, 안 제10조제2항, 안 제11조제4항, 안 제13조제3항, 안 제14조제2항 ~ 제3항)
- 정보공개 수수료 징수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」와 부합되도록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」 제28조 규정 준용 부분 삭제(안 제19조 제3항)

다. 알기 쉬운 용어 및 중복사항 정비

- 상위법률에 명시된 중복내용 삭제(안 제2조제8항, 안 제22조제4항)
- 이해하기 쉽고 문맥에 맞도록 문구 정비(안 제2조제4항, 안 제5조제2항, 안 제7조제2항, 안 제10조제1항, 안 제11조제4항, 안 제14조제1항, 안 제21조제2항, 안 제22조제2항 제1호, 안 제24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전자정부법」

5. 검토의견

- 본 안건은 인터넷 환경의 변화로 이용자가 없어 중단되거나 실효성이 낮은 서비스를 현재 홈페이지 운영 환경에 적합하도록 정비하고 그 밖에 관련 법규 개정사항 반영과, 중복내용 및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임.
- 본 안건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음.
 - 첫째, 인터넷 환경 변화에 따른 실효성이 저조한 서비스를 폐지하였음.
 - 둘째, 관련법규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음.
 - 셋째, 알기 쉬운 용어 및 중복사항을 정비하였음.
- 인터넷 환경 변화에 따른 실효성이 저조한 서비스 폐지는
 - 홈페이지 이용 마일리지 제도 폐지와 이용자 감소로 종료된 전자우편서비스 관련 내용을 삭제하였음.(안 제15조의2, 별표1, 안 제5장, 안 제20조)
- 관련법규 개정사항 반영은
 - 관련조례(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」), 관련법령(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, 「민원 처리에 관한

법률 시행령」) 개정사항 반영과 정보공개 수수료 징수 관한 사항을 관련조례(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정보 공개조례」)에 부합되도록 하였음(안 제4조, 안 제2조제6호, 안 제10조제2항, 안 제11조제4항, 안 제13조제3항, 안 제14조제2항~제3항, 안 제19조제3항)

○ 알기 쉬운 용어 및 중복사항 정비는

- 상위법률에 명시된 중복내용 삭제함(안 제2조제8항, 안 제22조제 4항)
- 이해하기 쉽고 문맥에 맞도록 문구 정비함(안 제2조제4항, 안 제5조제2항, 안 제7조제2항, 안 제10조제1항, 안 제11조제4항, 안 제14조제1항, 안 제21조제2항, 안 제22조제 2항제1호, 안 제24조)

○ 종합의견은 인터넷 환경의 변화로 실효성이 낮은 서비스를 정비하고,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개정이며, 그 밖에 상위법령 중복내용 조항 정비 및 구민이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적합하게 개정한 것으로 사료됨.

참 고 자 료

1

전자정부법

제3조(행정기관등 및 공무원 등의 책무)① 행정기관 등의 장은 전자정부 구현을 촉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야 하며, 정보통신망의 연계 및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
②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소속 직원은 담당업무의 전자적 처리에 필요한 정보기술 활용능력을 갖추어야 하며, 담당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때 해당 기관의 편익보다 국민의 편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